

# 原價計算報告書

---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용역에 따른  
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

---

2015. 11.



창원경륜공단

# 원 가 계 산 보 고 서

용역명 :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용역에  
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

● 제 출 서 : 원가계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서명·날인하여 제출합니다.

2015. 11.

직 책	성 명
책 임 연구원	오 장 석 (인)
연 구 원	박 지 혜 (인)

(사) 경 남 경 영 경 제 연 구 원  
Kyungnam Management & Economics Research Institute

# 목 차

---

I. 예정원가계산보고서(본문).....	1
II. 조 사 개 요.....	2
◎ 총괄설계예산서.....	3
◎ 본장부문원가계산서.....	8
◎ 김해지점부문원가계산서.....	18
◎ 근거자료.....	34
◎ 원가계산용역기관.....	-

# 1. 예정원가계산보고서 (본문)

창원경륜공단 귀하

귀 창원경륜공단에서 의뢰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산출한 원가계산 결과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< 아 래 >

(단위 : 원)

구분	단 위	수 량	단 가	총 금액	비 고
본 장 부 문	개월	12	₩14,905,000	₩178,860,000	부가가치세 포함
김 해 지 점 부 문	개월	12	₩4,290,000	₩51,480,000	
총 합 계				₩230,340,000	

2015. 11.

(사) 경 남 경 영 경 제 연 구 원 장

Kyungnam Management & Economics Research Institute

## 2. 원가계산의 개요

### 1. 원가계산의 목적

본 원가계산은 창원경륜공단으로부터 위촉받아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용역에 대한 소요비용 적정원가를 조사·분석·회보함으로써 귀 창원경륜공단의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 2. 원가계산의 방법

본 원가계산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(2015. 6. 23)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하여 산정하였다.

### 3. 인건비

인건비의 작업일수 및 시간은 작업시방서와 전문 용역업체의 인원배치현황을 참고하였으며, 2013년도 직종별임금에 의거하여 노임단가를 적용 계산하였다.

### 4. 경비

경비는 비목별로 감가상각비, 보험료,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, 예규에서 인정하는 비목을 적용하였다.

### 5. 일반관리비 및 이윤

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용역 해당비율 5%, 10% 이내로 각각 적용·산출하였다.

### 6. 원가계산의 결론

본 원가계산의 결론은 첨부된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양에 의거 제 자료 및 현행 용역업체의 현황을 참고하여 추정산출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.

- 가) 용역 시방서의 변동
- 나) 인원의 변동
- 다) 업무여건의 변동
- 라) 기타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의 변동



# 총괄 설계예산서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구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과 장		담당자		심사자		설계자		설계년월	2015. 11.
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-	-----------

2015년도

##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용역 설 계 예 산 서

### ■ 용역개요

- 용역명 : 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용역
- 용역기간 : 2016. 01. 01. ~ 2016. 12. 31

### ■ 총 용역비

구 분	금 액	비 고
총 용 역 비	일금 이억삼천삼십사만원정 (₩230,340,000)	
공 급 가 액	일금 이억구백사십만원정 (₩209,400,000)	
부 가 가 치 세	일금 이천구십사만원정 (₩20,940,000)	



# 원가계산서

---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구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## I. 연간 위탁비 원가계산서

[표 1]

(단위 : 원/년)

비 목		구 분	단 위	수 량	단 가	금 액
순 원 가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10,916,321	₩130,995,852
		간 접 노 무 비	개월	12	₩0	₩0
		소 계	개월	12	₩10,916,321	₩130,995,852
	경 비	보 험 료	개월	12	₩1,050,682	₩12,608,184
		복 리 후 생 비	개월	12	₩464,694	₩5,576,328
		소 계	개월	12	₩1,515,376	₩18,184,512
	순 원 가		개월	12	₩12,431,697	₩149,180,364
	일 반 관 리 비		개월	12	₩497,268	₩5,967,216
	이 윤		개월	12	₩621,035	₩7,452,420
	총 원 가		개월	12	₩13,550,000	₩162,600,000
부 가 가 치 세		개월	12	₩1,355,000	₩16,260,000	
합 계		개월	12	₩14,905,000	₩178,860,000	

## I-1. 월간 위탁비 원가계산서

[표 1-1]

(단위 : 원/월)

비 목		구 분	금 액	구 성 비 (%)	비 고
순 원 가	노 무 비	직 접 노 무 비	₩10,916,321	80.56	
		간 접 노 무 비	₩0		
		소 계	₩10,916,321		
	경 비	보 험 료	₩1,050,682	11.18	
		복 리 후 생 비	₩464,694		
		소 계	₩1,515,376		
	순 원 가		₩12,431,697	91.75	노무비+경비
	일 반 관 리 비		₩497,268	3.67	순원가×4%
	이 윤		₩621,035	4.58	(순원가+일반관리비)×4.8%
총 원 가		₩13,550,000	100	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	
부 가 가 치 세		₩1,355,000		총원가×10%	
합 계		₩14,905,000		총원가+부가가치세	



# 노무비 집계표

---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구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## Ⅱ. 노 무 비 집 계 표

[표 2]

(단위 : 원)

비 목 구 분	직접노무비	간접노무비	합 계
1. 직접노무비	₩10,916,321	₩0	₩10,916,321
2. 간접노무비	₩0	₩0	₩0
합 계	₩10,916,321	₩0	₩10,916,321

## 1. 직접노무비 산출명세서

[부표 1]

(단위 : 원)

구분	직종	인원	노무비	금액	비고
창원경륜공단 건물 내·외	반장	1인	₩2,009,261	₩2,009,261	
	경비원	5인	₩1,781,412	₩8,907,060	
소계		6인		₩10,916,321	

주) 경비인원 6인 기준시 적용금액(월기준)

## 1-1. 반장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2]

(단위 : 원)

	구분	단 위	수 량	단 가 (시급)	금 액	비 고
기 본 급	기 본 급	시간	217.86	₩8,018	₩1,746,801	※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0.0	₩8,018	₩0	※근로기준법 제63조(적용의 제외)
	소 계				₩1,746,801	
제 수 당	연 차 수 당	시간	12.5	₩8,018	₩100,225	※(10시간×15일)÷12개월=12.5시간 ※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야간근로수당	시간	0.0	₩4,009	₩0	※단가:시급×150% ※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833	₩12,027	₩10,018	※단가:시급×150% ※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 계				₩110,243	
	상 여 금	%	0.0	₩145,567	₩0	※단가:기본급÷12개월
	퇴 직 급 여 총 당 금				₩152,217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×12개월 ÷366일×30일÷12개월
	월 평 균 인 건 비				₩2,009,261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 총당금
<p>비고)</p> <p>■ 실 근무시간 산출근거 : 12시간(07:00~19:00) - 2시간(점심 휴게시간) = 10시간</p> <p>■ 월 근무시간 산출근거 : (366일 ÷ 12개월 ÷ 7일) × 10시간 × 5일 = 217.86시간</p> <p>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</p> <p>① 근로자의 날 적용</p> <p>② (1일÷12개월) × 10시간 = 0.833시간</p>						

## 1-2. 경비원 노무비 산출내역서

[부표 3]

(단위 : 원)

구분	단위	수량	단가 (시급)	금액	비고	
기본급	기본급	시간	175.59	₩8,018	₩1,407,881	※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)
	유급휴일수당	시간	0.0	₩8,018	₩0	※근로기준법 제63조(적용의 제외)
	소계				₩1,407,881	
제수당	연차수당	시간	11.25	₩8,018	₩90,203	※(9시간×15일)÷12개월=11.25시간 ※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유급휴가)
	야간근로수당	시간	34.76	₩4,009	₩139,353	※단가:시급×50% ※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휴일근로수당	시간	0.75	₩12,027	₩9,020	※단가:시급×150% ※근로기준법 제56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	소계				₩238,576	
상여금	%	0.0	₩117,323	₩0	※단가:기본급÷12개월	
퇴직급여총당금				₩134,955	(기본급+제수당+상여금)×12개월 ÷366일×30일÷12개월	
월평균인건비				₩1,781,412	기본급+제수당+상여금+퇴직급여총당금	

비고)

■ 실 근무시간 산출근거

- 주간근무시간 : 12시간(07:00 ~ 19:00) - 2시간(점심 휴게시간) = 10시간
- 야간근무시간 : 12시간(19:00 ~ 07:00) - 4시간(심야 휴게시간) = 8시간
- 평균근무시간 : 9시간

■ 월 근무시간 산출근거

- 주간근무시간 : (366일 ÷ 12개월 ÷ 7일) × 10시간 × 2.43일 = 105.88시간
- 야간근무시간 : (366일 ÷ 12개월 ÷ 7일) × 8시간 × 2일 = 69.71시간
- ∴ 소계 : 175.59시간/월

■ 야간근무시간 산출근거

- (366일 ÷ 12개월 ÷ 7일) × 4시간 × 2일 = 34.86시간/월
- 8시간(22:00~08:00) - 4시간(심야휴게시간) = 4시간

■ 휴일근로수당 수량산출근거

- ① 근로자의 날 적용
- ② (1일÷12개월) × 9시간 = 0.75시간

## 노임단가 임율산출표

[부표 4]

(단위 : 원)

구분	명칭	노임단가	작업시간	기본시급	적용단가 (최저가)
경비원	보통인부 (대한건설협회)	₩89,566	8	₩11,195	₩8,018
	단순노무종사원 (중소기업중앙회)	₩64,150	8	₩8,018	

- 주) 1.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통계작성 승인기관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노임단가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최저 단가를 산출하였다.
2. 행정자치부 예규 제23호(2015. 6. 23)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5관 1-나 항(단순용역(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)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 적용) 및 행정안전부 비정규직 관련 회계통칙(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예산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)의 단순노무 일반용역(일반용역 중 청소, 검침, 시설물 경비, 시설물 관리 등 원가계산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함)의 보통인부(현 명칭 **단순노무종사원**) 적용
3.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(2014. 12)에 따라 기본급(급여산정 시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시급, 일급, 월급 등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급여(본봉)), 통상적 수당(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수당, 생산 장려수당, 자격수당, 가족수당, 근속수당 등))을 포함한다.



# 경비 집계표

---

2016년도 창원경륜공단 경비구역에 따른 소요비용 산출 원가계산 보고서

### Ⅲ. 경비 집 계 표

[표 3]

(단위 : 원)

비 목	단 위	수 량	금 액	금 액	비 고
보 험 료	식	1	₩1,050,682	₩1,050,682	부표 5 참조
복 리 후 생 비	식	1	₩464,694	₩464,694	부표 6 참조
합 계				₩1,515,376	

# 1. 보험료 산출명세서

[부표 5]

(단위 : 원)

보 험 명		대상금액	단 위	수 량	금 액	비 고
보험료 대상금액	반 장	₩1,857,044	인	1	₩1,857,044	직접노무비 -퇴직급여충당금
	경 비 원	₩1,646,457	인	5	₩8,232,285	
	소 계				₩10,089,329	
산 재 보 험 료		₩10,089,329	%	1.7	₩171,519	
국 민 건 강 보 험 료		₩10,089,329	%	3.035	₩306,211	
장 기 요 양 보 험 료		₩306,211	%	6.55	₩20,057	
국 민 연 금 보 험 료		₩10,089,329	%	4.5	₩454,020	
고 용 보 험 료		₩10,089,329	%	0.9	₩90,804	
임 금 채 권 보 장 보 험		₩10,089,329	%	0.08	₩8,071	
<b>합 계</b>					<b>₩1,050,682</b>	

비고)

1. 보험료 대상금액 : 직접노무비 산출서 참조

2. 보험료를 산출근거

1) 산재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17/1,000
-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제14조(보험료율의 결정)
-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-58호

2) 국민건강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 + 상여금 + 제수당) × 3.035/100
-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(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)

3) 노인장기요양보험료

- ① 국민건강보험료 산출액 × 6.55/100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(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)

4) 국민연금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45/1,000
- ② 국민연금법 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·징수 등)

5) 고용보험료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9/1,000
-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고용보험료율)

6) 임금채권보장기금

- ① 기준소득월액(기본급+상여금+제수당) × 0.8/1,000
-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(사업주의 부담금)
-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-67호

## 2. 복리후생비 산출명세서

[부표 6]

(단위 : 원)

구분		수량	인원	단가	금액	월상각액	비고
경비복	동근무복 -상·하의	연1회	6명	₩43,000	₩258,000	₩21,500	
	동근무복 (잠바)	연1회	6명	₩34,000	₩204,000	₩17,000	
	하근무복 -상·하의	연1회	6명	₩38,000	₩228,000	₩19,000	
	성하복 -상·하의	연1회	6명	₩38,000	₩228,000	₩19,000	
모자-동정모		연1회	6명	₩5,000	₩30,000	₩2,500	
모자-하정모		연1회	6명	₩5,000	₩30,000	₩2,500	
장화		연1회	6명	₩7,727	₩46,362	₩3,864	
면장갑		연4회	6명	₩141	₩3,384	₩3,384	
호루라기		연1회	6명	₩3,000	₩18,000	₩1,500	
우의		연1회	6명	₩3,636	₩21,816	₩21,816	
급식비		366일	2.43명	₩3,500	₩3,112,830	₩259,403	
야식비(컵라면)		366일	2명	₩764	₩559,248	₩46,604	
명절상품권		연3회	6명	₩31,082	₩559,476	₩46,623	
<b>합 계</b>						<b>₩464,694</b>	

주) 1. 월발생액 : (수량 × 인원) × 단가 ÷ 12개월